

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91 |
|----------|----|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, 군정발전 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,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기능 (안 제2조)
 - 위원회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
- 나. 구성 및 임기 (안 제3조, 안 제5조)
 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
 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, 임기 2년, 연임 가능함
- 다.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(안 제7조)
 - 정기회의 연 1회 소집, 임시회의 군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- 라. 의견청취 등 (안 제9조)
 -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토론회, 세미나, 공청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
- 마. 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(안 제11조)
 -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서협의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1.9.6~9.27(21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 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군정발전과 평창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
2.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
3.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제안
4. 교육분야 시책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5.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
6. 집단민원 및 장기 미추진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제언
7.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각 분야별 민간 경영인,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직능단체·사회단체 등의 대표급(회원) 인사 또는 개인

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 중 새로 선출되거나, 결원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.

-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실과장이 되고,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·과·소장과 주무담당 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견 청취 등) ①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토론회, 세미나,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토론회, 세미나,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의결사항의 통보)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)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, 그 밖의 협조 요청을 받은 실·과·소·직속기관·사업소장 및 읍·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